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항로표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로표지를 디지털정보 중심으로 지능정보화 하고,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의무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에서 항로표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폐지함에 따라 타당성 검토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나. 사설항로표지 관리 신고 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이용되는 선박의 보험이나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증서 확인 근거 신설(안 제11조)

다. 항로표지 설치·관리 종사자 등 승선한 사람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과 대상, 가입금액을 규

정함(안 제13조의2)

라. 향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라 향로표지 기반 정보 제공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마.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사설향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이전·철거 명령, 손실보상 등 관련 사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등 미비점 개선(안 제22조)

바. 등명기용 전구 또는 LED 모듈의 예비품 보유기준을 삭제하여 완화(안 별표 1)

사.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 '19.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및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마련(안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를 “계획이 시행되는 연도”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현황조서”를 “현황조서(現況調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내 주어야”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맞는지”를 “적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를 “제한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미치는 영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허가하는”을 “허가할”로 한다.

1. 항로표지의 설치 필요성
2. 항로표지의 배치 적정성
4. 항로표지의 구조 안전성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하여야”를 “설치·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송하여야”를 “전송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하여야”를 “설치·운영해야”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송하여야”를 “전송해야”로, “부정확하거”를 “정확하지 않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관리하여야”를 “설치·관리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해야”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내 주어야”를 “보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맞는지”를 “적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를 “제한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미치는 영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허가하는”을 “허가할”로 한다.

1.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필요성
2. 사설항로표지의 배치 적정성
4. 사설항로표지의 구조 안전성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관리 종사자 등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대상: 선박의 최대 승선인원을 대상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제14조제1항 중 “알려 주어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15조 중 “알려 주어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를 “사항을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무상대부에 관하여”를 “무상대부”로 한다.

제6장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의 사용 목적과 범위 및 기간
2. 정보의 이용방법
3. 정보의 보호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제19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사항이 포함되어야”를 “사항을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및 제22호 중 “사설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를 각각 “사설항로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손실보상[”를 “손실보상(”로, “손실보상(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에 발생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을 “손실보상”으로, “해당

한다]”를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대집행”을 “대집행(代執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3조의3에 따른 향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8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보호조치 등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향로표지 점검·정비용 선박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향로표지 설치·관리자 등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별표 2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향로표지 점검·정비용 선박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향로표지 설치·관리자 등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 표지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90	180	300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호	90	180	300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3호	90	180	300
라.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4호	90	180	300
마.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4의2호	1)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60만원 2) 위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2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5호	90	180	300
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사실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6호	90	180	300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법 제55조	90	180	300

· 보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1항제7호			
자. 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8호	90	180	300
차.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정박 또는 정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9호	90	180	300
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0호	90	180	300
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1호	90	180	300
파.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비·용품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2호	90	180	300
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3호	90	180	300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u>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 ----- ----- -- <u>계획이 시행되는 연도</u> ----- ----- <u>수립</u> <u>해야</u>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u><삭 제></u>
1. <u>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성과 분석</u>	
2. <u>해상교통 환경의 변화</u>	
3. <u>선박사고 현황 및 항행 위해 요소의 조사·분석</u>	
4. <u>항로표지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분석</u>	
5. <u>항로표지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u>	
6. <u>항로표지에 대한 소요재원</u>	

투입의 효율성

7. 항로표지 관련 새로운 기술,
제도 등의 도입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
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
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3.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절한지
여부

3. 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① -

---- 제출해야 -----.

1. ----- 현황조서(現況調書)

2. 3. (현행과 같음)

② -----

---- 보내야 -----.

1. 항로표지의 설치 필요성

2. 항로표지의 배치 적정성

3. -----
----- 적합 -----

4.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
지 여부

5. 항로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
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
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
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
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
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
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
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
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
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준국은 위성항법보정정보
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

4. 항로표지의 구조 안전성

5. ----- 제한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 -----

6. -----
----- 미치는 영향

③ -----

----- 결정해야 -----
----- 허가할 -----

-----.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
치·운영) ① -----

----- 설치·운
영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전송해야 -----

며,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정보 등을 전송할 것

5.·6. (생략)

②·③ (생략)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송신국은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정보 등을 전송할 것

6.·7. (생략)

② (생략)

제6조(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

----- 설치·운영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5. -----
----- 전송해야 -----
----- 정확하지 않거 -----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술개발) ① -----

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7조(보안대책)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
표지 등의 설치·관리) ① (생
략)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
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관리) ①
(생략)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
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
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
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

추진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안대책) ① -----

----- 수립·시행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
표지 등의 설치·관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
----- 관한 사항
은 -----.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에는 -----
----- 설치해야 -----.

③ -----

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관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관리의 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관리의 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① (생략)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 제출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관리의 대행) ① -----

----- 제출해야 -----.

② -----

----- 설치·관리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는 -----

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
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
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
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
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
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
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
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
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항로
표지 설치·관리 선박이 법 제2
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해
야 -----
----- 확인해야 한다.

----- 않는 -----

해야 -----.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① -----

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
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설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
한지 여부

3. 사설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
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
부

4. 사설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
전한지 여부

5.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으
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
지 여부

6.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

-- 경우에-----

----- 제출해야 -----.

② -----

--- 보내야 -----.

1.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필
요성

2. 사설항로표지의 배치 적정성

3. -----
----- 적합 -----
--

4. 사설항로표지의 구조 안전성

5. -----
-- 제한된 어업권에 대한 보
상 -----

6. -----
----- 미치는 영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③ -----

----- 결정해야 -----

허가할 -----

-----.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관리 종사자 등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대상: 선박의 최대 승선인원을 대상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을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① -----

----- 알려야 -----.

② -----

정해야 -----.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

----- 알려야 -----.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①

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신설>

<신설>

----- 사항을 포함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해야 -----.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무상 대부 -----

---.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 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 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 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제 출하여야</u>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 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 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 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u>게시하여야</u> 한 다. ④ (생략) 제20조(손실보상) ① 법 제47조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u>해야 한다.</u> 1. 정보의 사용 목적과 범위 및 <u>기간</u> 2. 정보의 이용방법 3. 정보의 보호 등 관리계획의 <u>적정성</u>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제</u> <u>출해야</u> ----. ③ ----- ----- ----- ----- ----- ----- ----- <u>게시해야</u> ----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손실보상) ① -----
--	--

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

-- 제출해야 -----
----- 사항을 포함해
야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통지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제출해야
-----.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

-----.

법보정시스템 및 지상과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 12. (생략)

1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의 현황변경 허가

14. ~ 21. (생략)

2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의 이전·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3. ~ 28. (생략)

2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항로표지의 이전·철거 등에 대한 손실보상(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에 발생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

1. ~ 12. (현행과 같음)

13. ----- 시설항로표지-----

14. ~ 21. (현행과 같음)

22. ----- 시설항로표지-----

23. ~ 28. (현행과 같음)

29. -----
-- 손실보상(-----

----- 손실보상

-- 해당한다) -----

--

30. ~ 32.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1. ~ 7. (생략) 8.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u>대집행</u> <u><신설></u> <u><신설></u> 9. · 10. (생략)	30. ~ 32.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u>대집행(代執行)</u> <u>8의2. 법 제43조의3에 따른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u> <u>8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보호조치 등</u> 9. · 10.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연 락 처	(044) 200 - 5872